

아리수 홍보물 게재 협약서

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(이하 '상수도사업본부'라 함)와 '에코타임스'(이하 '에코타임스')의 "아리수 홍보물 게재"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본 약정서는 제2조의 "아리수 홍보물 게재"와 관련한 '상수도사업본부'와 '에코타임스'의 역할과 조건,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.

제2조(사업 개요)

1. 건 명 : 아리수 홍보물 게재(기획기사)
2. 광고매체 : 에코타임스
3. 광고 게재 횟수 : 1회
4. 게재 일 : 2017년 12월 중
5. 약정금액 : 금1,100,000원(부가세 포함)

제3조 (진행 조건)

'에코타임스'가 이행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'에코타임스'는 아리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물(기획기사)을 1회 게재한다.
2. '에코타임스'는 아리수 홍보물 게재 완료 후 15일 이내에 게재된 지면과 함께 협찬금을 청구한다.

제4조(협약금액 및 지급 방법)

1. 아리수 광고 게재 협약금액은 금1,100,000원(부가세 포함)으로 한다.
2. 협약금액 지급은 광고 게재 후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'에코타임스'에서 '상수도사업본부'에게 청구하며 '상수도사업본부'는 청구일 기준 15일 이내에 제2조에 정한 약정금액(금1,100,000원 / 부가세 포함)을 지정된 계좌를 통해 '에코타임스'에 지급한다.

제5조(약정이행 및 협약해지)

'에코타임스'는 제3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. 만약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하여 협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



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'상수도사업본부'와 '에코타임스'는 상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각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'에코타임스'가 제3조에 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현저히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
2. '상수도사업본부'가 제4조에 정한 협약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3. 기타 협약의 유지 또는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6조(관할법원)

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, 의무에 관한 소송은 '상수도사업본부'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7조(준용 및 협의)

본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령을 준용하고, 이견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 및 관례에 따라 상호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8조(효력의 발생)

본 협약의 효력은 약정체결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, 협약사항의 이행완료시 또는 민·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사건 종료 시 소멸한다.

본 협약을 증명하고,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해 '상수도사업본부'와 '에코타임스'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7년 12월 15일

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: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
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직무대리 구 아 미 (인)

에코타임스 : 서울 은평구 역말로7길 3-2, 2층

발행인 김정문 (인)